『퇴직연금용 정기예금(만기지급형)』특약

제 1 조 약관의 적용

퇴직연금용 정기예금(만기지급형)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,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,「거치식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용어의 정의

- ① 이 예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1. "사용자"란「근로기준법」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,
 -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.
 - 2. "가입자"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.
 - 3. "퇴직연금사업자"란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제2조제1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법령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.
 - 4. "디폴트옵션제도"란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"사전지정운용제도"로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 - 5. "적립금"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.
- ② 제 ①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제 3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합니다.



제 4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 연금사업자로 합니다.

제 5 조 계약기간

- ① 이 예금은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또는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, 1년, 1.5년, 2년, 2.5년, 3년, 5년으로 합니다.
- ③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에서 연, 월, 일로 합니다.

제 6 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.

제 7 조 이자지급

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이자지급식 입니다.

제 8 조 만기처리방법

- ①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
 - 1. 이 예금은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 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합니다.
 - 2.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 한하여 자동 재예치에 대한 내용을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로 통지합니다.
- ② 확정기여형(DC), 기업형(IRP) 또는 개인형(IRP) 퇴직연금
 - 1.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됩니다. (다만,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재예치 됩니다)
 - 2.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



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합니다.

제 9 조 적용이자율

- ① 이 예금의 만기해지시에는 신규가입일 또는 자동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시에는 신규가입일(또는 최종 재예치일)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제 10 조 특별 중도해지

제9조 제②항에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특별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. 단, 8.과 11.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- 1.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2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3.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간내 계약이전 및 가입자 제도 전환의 경우
- 4.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 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- 5.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- 6.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- 7. 수탁자의 사임
- 8.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을 위한 경우



- 9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경우
- 10. 가입자의 사망
- 11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 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

제 11 조 예금 일부 해지

- ① 이 예금은 계약기간(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재예치된 계약기간)중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 해지가 가능합니다.

 단,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.
- ②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,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에는 위 ①항의 일 부해지 횟수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③ 예금 신규가입일 당일에는 일부 해지 할 수 없습니다.
- ④ 위 ①항에 의해 일부 해지하는 경우 해지금액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제 12 조 기타

-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, 담보 제공, 지급정지 등은 불가능합니다. 다만,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.
- ② 이 예금은 퇴직연금 운용 지시에 의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며, 통장은 발급하지 않습니다.
- ③ 상기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.



부 칙

이 약관(특약)은 2011 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다만, 「제 7 조 재예치」는 시행일 이후 최초 신규계좌부터 적용한다.

- 이 약관(특약)은 2014년 3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부터 적용합니다.
- 이 약관(특약)은 2020년 2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고객도 적용됩니다.
- 이 약관(특약)은 2021 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고객도 적용됩니다.
- 이 약관(특약)은 2022 년 12 월 2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고객도 적용됩니다.
- 이 약관(특약)은 2024년 7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및 신규가입고객 모두 적용됩니다.

이 약관(특약)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및 신규가입고객 모두 적용됩니다.

※ 이 약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 됩니다.